

제279회대구광역시의의회(정례회)

#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차(부록)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 【검토보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검토 과정

- 발 의 자 : 황순자 의원, 강성환 의원, 김원규 의원, 김지만 의원  
김태원 의원, 박갑상 의원, 배지숙 의원, 송영헌 의원  
윤기배 의원, 이영애 의원, 이진련 의원, 이태손 의원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8일
- 검토기간 : 2020년 11월 25일 ~ 12월 10일

## 2. 주요 내용

- 건설공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감의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부실공사를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교육감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부실공사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부실공사 여부, 부실별점 및 부실공사등급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3.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입법예고 : 2020년 11월 4일 ~ 11월 10일 (의견 없음)

## 4. 검토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 신설 등 대구광역시교육청 각종 건설공사 시행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 ▶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 안 제3조에서 교육청, 공립유치원, 학교 등 적용범위를 규정함
- ▶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이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사항 >

1. 건설공사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안 제5조에서 교육감이 공사감독자 대상 부실공사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부실공사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 및 신고인의 보호에 대해 규정함
- ▶ 안 제8조에서 건설공사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안 제9조에서 교육감이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실공사방지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 사항 >

1. 부실공사 여부
2. 부실벌점 및 부실공사등급
3. 부실공사등급에 따른 포상금액
4. 그 밖에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안 제10조에서 부실공사 판정결과에 따른 조치를 명시함
- ▶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제한 사항에 대해 명시함

○ 검토 결과

- ▶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 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요소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음
- ▶ 또한, 공사감독자 대상 부실공사 방지 교육을 통한 건설공사의 불성실 시공을 감시함은 물론 부실공사 신고 및 부실시공방지 위원회 운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다만, 학교를 포함한 교육청 발주 건설공사는 학생의 안전과 직결 되는 만큼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부실공사 감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 ▶ 특히, 학교의 경우 방학기간을 통해 대부분 공사가 이뤄짐에 따라 개학 일정을 맞추기 위한 날림,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반 공사보다 더욱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부실공사 신고에 따라 건설 시공 중인 상황에 대한 행정 조치가 이뤄질 경우, 현장상황은 물론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적절한 운영과 함께 내실있는 부실방지 시책 마련으로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전국 시·도 및 교육청별 포상금 및 신고대상 공사 비교**

교육청별	조례안	부산시 교육청	인천시 교육청	울산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경남 교육청	충남 교육청
포상금 상한 (단위 : 만원)	500	1,000	500	1,000	500	1,000	500
포상금지급 대상공사(하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10억원	제한 없음
신고대상	제한 없음	준공 후 1년 이내	준공 후 1년 이내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지자체별	대구시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경남	기타
포상금 상한 (단위 : 만원)	100	1,000	100	500	500	500	광주
포상금지급 대상공사(하한)	10억원	10억원	50억원	50억원	10억원	10억원	경북
신고대상	시공중	준공 후 1년 이내	시공중	준공 후 1년 이내	준공 후 1년 이내	시공중	전남

<붙임>

## 관 계 법 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10. 생략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에 관한 사항
12. ~ 17. 생략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 ③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삭제

- ②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